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216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1.
제 출 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익금의 직접 사용금지,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사용 규정에 위배됨으로 제10조제2항을 삭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오기정정이 안 제36조제1호, 제5호 및 안 38조 제1항 수정
-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 신설

2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
- 안 제36조제3항제1호 “영 제38조제1항제7호. 제8호. 제13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 제6호. 제7호. 제12호 “로 수정
- 안 제36조제3항제5호 “영 제38조제1항제5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4호” 로 수정
- 안 제38조제1항 “영 제38조제1항제24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” 로 수정
- “부칙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 를 신설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 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“영 제38조제1항제7호.제8호.제13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6호.제7호.제12호 “로 한다.

제36조제3항제5호 “영 제38조제1항제5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4호” 로 한다.

제38조제1항 “영 제38조제1항제24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” 로 한다.

“부칙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 를 신설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사용.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)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<u>사용료 및 대부료(연체료.변상금을 포함한다)</u>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.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. 영 제38조제1항제7호. 제8호.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영 제3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영 제38조제1항제24호에 의하여 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생략) 제2조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사용.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)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삭제>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(제정안과 같음)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. 영 제38조제1항제6호. 제7호.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. (제정안과 같음) 3. (제정안과 같음) 4. (제정안과 같음) 5.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하여 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제정안과 같음) 제2조(제정안과 같음)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.</p>